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교인 장례 절차

절차 제정부서 : 봉사부

1	교인 장례 절차 제정	2019.04.01
번호	내용	일자

제 1 조 : 적용범위

이 절차의 적용범위는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등록교인에 적용하며, 소천시 본교회에 출석중인 교인 (장기간동안 투병등으로 피치 못해 출석치 못한 경우를 포함) 에 한한다

제 2 조 : 교회장

(1) 교회장의 대상

교회장은 아래 교역자 및 장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유족이 교회장을 원할경우에만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룬다).

- 현 전임 (Full time) 교역자
- 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 시무장로 및 본교회에서 시무했던 은퇴장로

(2) 교회 장례준비

- 교회는 봉사부가 주관하여 임시 장례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장례준비 및 시행 (장례업체가 공급하는 service 항목 이외의 사항)
 - 교회와 유족 및 장례업체와의 Coordination
 - 조문객 접대 음식, 조화 및 조문객 안내 :
고인이 속한 목장 및 또래모임을 통해 조문객접대 (대체로 장례식후 접대) 음식 및 조화 를 준비 하고 조문객 안내(주차안내 포함)는 또래 모임에서 담당한다
(예년회원으로써 목장이 없을경우 음식및 조화는 권사회에서 그리고 조문객 안내(주차안내 포함)는 또래모임에서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 운구 : 시무장로 들이 운구 (운구차에서 교회안으로 그리고 교회안에서 운구차로 운구)
 - 방명록 작성 및 부의금 접수 :
봉사부에서 방명록 작성 및 부의금을 수납하고 유족대표와 부의금 정산을 한다

(3) 경비처리

- 교회는 최대 \$1,500 의 한도내에서 관조화, 입관예배후의 음식접대,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그외 장례경비는 유족측에서 부담한다
- 특별히 유족은 교회 장례식후 장례식 예배 반주자와 교회청소비를 부담한다
(현재 각 100 불씩 지불함)

제 3 조 일반 장례식 (장례식장 이 교회인 경우)

(1) 대상

- 고인이 등록 교인이며 유족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원하고 당회에서 이를 받아 들였을 경우

(2) 장례준비 및 시행(장례업체 service 항목 이외의 사항)

- 장례절차를 교역자와 협의하여 봉사부가 주관하고, 고인이 속한 목장모임과 또래모임은 본건과 관련하여 봉사부 산하의 임시조직 이 되어 봉사부가 유족 및 유족이 의뢰한 장례 service 업체와 협의된 절차 및 자체적 계획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한다

- 조문객 접대 음식, 조화및 안내:

- 고인이 속한 목장을 통해 조문객접대 (장례예배후) 음식및 조화 준비를 하고 주차안내를 비롯한 조문객 안내는 또래모임에서 담당한다
- 예속회원으로써 목장이 없을경우, 음식및 조화는 권사회에서 준비하고 , 조문객 안내 (주차안내 포함) 는 또래모임에서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 고인이 속한 목장이나 또래가 없을경우 고인이 속한 사역부서에서 음식, 조화를 준비하고, 사역부서가 없거나 사역부서에서 할수 없을경우 권사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 안내는 또래모임에서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 운구 (교회 밖에서 안으로, 교회 안에서 밖으로)

봉사부는 운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유족및 장례업체와 협의 하여 필요시 교인 또는 또래 모임의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 방명록 작성 및 부의금 수납:

유족의 친구나 일가 친척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례식에 참여하는 친구나 친척이 거의 없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봉사부나 또래모임이 순차적으로 돕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봉사부는 이에 협조하는 사람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여 사후에 금전적 혼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경비처리

- 장례예배후 음식 및 조화비용은 유족측에서 부담한다
- 교회청소비와 장례예배 반주자 수고비는 유족측에서 부담한다

제 4 조 Memorial Service (화장후 예배) 로 할경우

(1) 대상

- 고인이 등록 교인이며 유족이 교회에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원하고 당회에서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

(2) 장례준비 및 시행

- 아래 5 조 (2) 항을 적용한다
- 경비처리 :

교회는 장례예배를 주관하고 장소를 제공하지만, 모든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유족이 부담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봉사부는 반드시, 장례절차등을 유족측과 협의할 때에사전에 본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유족측과 협의 해야한다

- 조문객 접대음식
- 조화
- 장례예배시 반주자 수고비
- 교회 청소비
- 기타 예기치 못한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제 비용

제 5 조 일반 장례식 (장례식장 이 Funeral Home 인 경우)

(1) 대상

- 등록교인

(2) 장례준비 및 시행(장례업체 service 항목 이외의 사항)

- 장례절차를 교역자와 협의하여 봉사부가 주관하고, 고인이 속한 목장 모임과 또래모임은 본건과 관련하여 봉사부 산하의 임시 조직이 되어 봉사부가 유족 및 유족이 의뢰한 장례 service 업체와 협의된 절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한다
- 조문객 접대 음식, 조화 및 안내 :
 - 고인이 속한 목장을 통해 조문객 접대 (장례예배후) 음식, 조화를 준비하고 , 또래모임에서는 조문객안내를 한다.
 - 에녹회원으로써 목장이 없을경우 조문객 접대 음식은 권사회에서 준비하고 조문객 안내는 또래모임에서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 고인이 속한 목장이나 또래가 없을경우 고인이 속한 사역부서에서 음식, 조화를 준비하고, 사역부서가 없거나 사역부서에서 할수 없을경우 권사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 안내는 또래모임에서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 방명록 작성 및 부의금 수납:
 - 유족의 친구나 일가 친척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례식에 참여하는 친구나 친척이 거의 없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봉사부나 또래모임에서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 봉사부는 이에 협조하는 사람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여 사후에 금전적 혼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4) 경비처리

- 모든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유족이 부담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봉사부는 반드시 장례절차등을 유족측과 협의할 때에, 사전에 본사항을 유족측과 협의 해야한다
- 모든 장례절차과정상 조문객 접대 음식비
- 반주자 수고비

제 6 조 장례식 공지 (공통사항)

- 교역자는 사역부서, 목장, 또래조직을 통해 교회 전 성도들에게 장례식 일정을 공지한다

제 7 조 기타조항

- 켈거리 한인장로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고인의 유족이 특별히 교회에서 장례식 요청시 임시당회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위의 내용가운데 포함되지 않은사항 으로서, 장례절차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협조해 주어야하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면 봉사부는 담임교역자와 담당 장로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차후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에서는 차후에 이를 본규정에 삼입 또는 교정을 하여 규정에 반영할 것인지 결정한다